

<자료문의> 법학적성시험 연구사업단 TEL 02-888-2097/E-mail lawschool@leet.or.kr

= 법학적성시험 개선 계획 발표 =

- ❖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의 정량평가 비중 강화에 따라 법학적성시험 타당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안 마련
- ❖ 수험생들의 예측가능성 보장을 위해 개선안은 2019학년도부터 적용하며, 응시료 8% 인하는 2018학년도부터 즉시 시행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형규 이사장)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법학적성시험 개선계획(이하 “개선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법학전문대학원 선발제도 개선*에 따라 2017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정량평가(법학적성시험, 학부성적, 외국어성적)의 비중이 강화되고, 특히 법학적성시험의 역할과 비중이 중요시됨에 따라
 - * ①입학서류 내 부모·친인척 신상 기재 금지, 기재 시 불이익 조치, ②정량평가 비중 강화 및 요소별 실질반영률·환산방법 공개, ③무(無)자료 면접 등 정성평가 공정성 확보, ④선발결과 공개 등
- 법학적성시험이 법학수학능력 및 법조인으로서의 자질과 적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수험생들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2018학년도(2017년 시행)에는 현행 문항 수 및 시험시간을 유지한 가운데 문제유형, 비율 등을 조정할 계획이며, 2019학년도(2018년 시행) 시험부터 전면 시행예정이다.

- 법학적성시험 연구사업단은 기초 연구, 공청회, 모의시험, 자문회의(연구기간: 2015년 2월 ~ 2016년 8월) 등을 통해 이론적 연구와 교육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2018학년도(2017년 시행) 시험에서는 현행 72문항 310분을 유지한 가운데, 추리논증 영역에서 '규범 이해 및 적용' 문항의 비중을 높이고, 논술 영역에서 2문항 중 1문항을 사례형으로 출제하게 된다.
 - 추리논증 영역의 '규범 이해 및 적용'은 기존 원리적용 유형을 발전시켜 수험생들의 문제해결능력, 상황분석력, 추론능력 등을 평가하고, 논술 영역의 '사례형'은 논증적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유형이다.
- 2019학년도(2018년 시행) 시험부터는 72문항 305분으로 변경되며, 언어이해 영역은 문항 수를 줄이고(35문항→30문항), 추리논증 영역은 문항 수를 늘려(35문항→40문항) 추리논증 영역의 비중을 강화하였다.
 - 언어이해 영역은 전체 문항 수 감소에 따라 시험시간을 현행 80분에서 70분으로 조정하고, 제시문 수는 11개에서 10개로 조정한다.
 - 추리논증 영역의 문항 수 증대에 따라 시험시간을 현행 110분에서 125분으로 조정하고, 문항 당 풀이시간*을 현행과 유사하게 유지하여 수험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 (현행) 문항 당 3분 8.5초 → (개선안) 문항 당 3분 7.5초
 - 논술 영역에서는 2문항 모두 사례형으로 출제하며, 시험시간을 현행 120분에서 110분으로 조정한다.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수험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응시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고, 경제적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면제제도는 지속 시행하기로 하였다.
-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응시수수료는 **248,000원**으로 현행 270,000원에서 22,000원(약 8.15%) 인하할 계획이다.
- 2015학년도(2014년 시행) 시험부터 실시하고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응시수수료 면제제도는 지속 시행하여, 취약계층의 법학전문대학원 진입 지원에 힘쓰기로 하였다.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그의 자녀, 차상위계층 복지급여수급자 및 그의 자녀, 차상위계층 우선돌봄 자격자 및 그의 자녀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법학적성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서 필수전형요소인 만큼 시험의 타당도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 수험생들의 응시료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자 추이 등을 고려하여 응시수수료의 단계적 인하를 검토할 방침이다.

[붙임 1 : 법학적성시험 개선안 주요내용]

[붙임 2 : 추리논증 영역 '규범 이해 및 적용' 예시문항]

[붙임 3 : 논술 영역 '사례형' 예시문항]

1 추리논증 영역□ **규범 이해 및 적용 능력 측정 강화**

- ‘규범 이해 및 적용’ 문항 유형은 법학전문대학원 수학능력이나 법조인이 갖추어야 할 사고능력과 관련이 높음
- 종래에도 추리논증 영역에서 ‘규범 이해 및 적용’ 문항이 출제되고 있었으나 문항의 수나 특성이 제한적임
 - ‘규범 이해 및 적용’ 문항 유형은 규범 원리를 이해하여 제시된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현행 원리적용 유형에 속하나, 보다 세부적인 규범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는 특징이 있음
 - ※ 붙임2 ‘규범 이해 및 적용’ 예시 문항 참고
- ‘규범 이해 및 적용’ 문항을 확대 출제하여 관련 사고 능력의 수준을 보다 타당하게 검증하고자 함
 - 법학 지식의 평가를 배제하는 법 규정에 유의하여 가상의 규범 및 규칙을 적용하는 문항을 출제함

□ **추리논증 영역 문항 수 및 시간 확대**

- 전체 문항 수를 35문항에서 40문항으로 확대
 - 문항 수 증가에 따라 시험 시간을 확대하였으나, 문항 당 풀이 시간을 현행과 유사하게 유지하여 수험생의 혼란을 방지함
 - ※ 2009 ~ 2018학년도 및 개선안의 추리논증 영역 시간

	2009학년도	2010~2018학년도	개선안
시간/문항	120분/40문항	110분/35문항	125분/40문항
문항 당 시간	3분	3분 8.5초	3분 7.5초

2

언어이해 영역

□ 제시문 및 문항 수 축소

- 현재 언어이해 영역은 11개 제시문 35문항(80분)으로 구성됨
 - ※ 2개 제시문에서 각 4문항, 9개 제시문에서 각 3문항 출제
- 하나의 제시문에서 4문항(5지선다형) 20개 선택지 출제 시 문항·선택지들 간 간섭 가능성 증가
- 10개 제시문에 대해 각 3문항 출제를 기본 원칙으로 하여 총 30문항(70분)으로 구성
 - 2016학년도 시험을 30문항으로 재구성하여 모의실험을 실시한 결과, 현행과 비슷한 수준의 적절한 신뢰도(Cronbach'α)를 유지함

3

논술 영역

□ 사례형 논술 문항 출제를 통한 논증적 글쓰기 능력 측정 강화

- 현행 논술 문항은 긴 제시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독해 능력이 요구되는 유형임
 - ※ 2010-2017학년도 제시문(<보기>, <사례> 등 포함) 평균 글자 수: 약 5,500자
- 독해 능력은 언어이해 영역에서 중점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므로, 논술 영역에서는 사고를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의 평가에 초점을 두고자 함
 - '제시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분석 능력' 측정 중심에서 '논증적 글쓰기 능력' 측정 중심으로 개선

- ‘사례형’ 논술 문항을 통해, 법학 교육 및 법조 현장에서 강조되는 방식의 논증적 글쓰기 능력을 평가함으로써 논술 영역과 법학 교육의 관련성을 높이고자 함

< 사례형 논술 문항의 형태 >

- 문제 해결이 요구되는 상황(<사례>)을 제시함
- 관련된 원칙, 일반적인 이론적 견해 등을 제공할 수 있음
- 제시된 <사례>의 쟁점을 파악하고 각 쟁점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반대 의견에 대한 평가를 논거를 들어 서술하도록 함

- 2018학년도는 2문항 중 1문항, 2019학년도는 2문항 모두 ‘사례형’으로 출제
- ‘사례형’ 논술 문항은 문제 상황의 해결 방안과 판단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표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유형
- ※ 붙임2 ‘사례형’ 논술 예시 문항 참고

4 법학적성시험 응시료 인하

- 법학적성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응시수수료는 248,000원으로 기존보다 22,000원(금년대비 8.15%) 인하할 예정임
- 응시인원과 시험의 안정적 출제·시행을 위해 수지균형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임
- 2015학년도 시험부터 실시하고 있는 경제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는 유지
- 향후에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서민의 법조계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응시자 추이 등을 고려하여 응시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법학전문대학원 학업수행능력 및 법조인으로서의 자질·적성을 보다 정밀하게 측정하고 평가함
 - 학생의 적성과 능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
 -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학생 선발에 기여
- 응시수수료 인화로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 경감

〈 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개선 계획 요약 〉

- 문항 수 및 시험 시간 변경

현행 (2018학년도까지)			개선안 (2019학년도부터)		
영역	문항	시험 시간 (분)	영역	문항	시험 시간 (분)
언어 이해	35	80 (문항 당 2분 17초)	언어 이해	30	70 (문항 당 2분 20초)
추리 논증	35	110 (문항 당 3분 8.5초)	추리 논증	40	125 (문항 당 3분 7.5초)
점심			점심		
논술	2	120	논술	2	110
3개 영역	72	310	3개 영역	72	305

- 영역별 주요 변경 사항
 - 언어이해 영역: 제시문 10개로 구성
 - 추리논증 영역: '규범 이해 및 적용' 문항 확대 출제
 - 논술 영역: 2문항 모두 '사례형'으로 출제
-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
 - 문항 수 및 시험 시간은 변경 없이 현행 유지
 - 언어이해 영역: 변경 사항 없음
 - 추리논증 영역: '규범 이해 및 적용' 문항 비율 조정
 - 논술 영역: 2문항 중 1문항을 '사례형'으로 출제

1. 조직폭력단의 일원으로 알려진 갑이 소년 K를 차에 태우고 간 것이 목격되었고 이후 K가 실종되었다. K를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갑은 친구 을을 변호사로 선임하였다. <규정>에 근거한 판단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규정>

제3조 【변호사 비밀유지의무】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이하 ‘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알려준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중대하고 임박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비밀유지의무의 대상】

비밀유지 대상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 직무상 나눈 비밀 대화 및 문서를 포함한다.

제5조 【비밀유지의 기간】

비밀유지의무는 의뢰인이 포기하지 않는 한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지속된다.

—<보 기>—

- ㄱ. 갑이 납치사실을 인정하고 비밀을 지켜 달라고 부탁하면서 K의 소재를 알려주었다면, 을은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 ㄴ. 갑의 소송 진행 중, 갑의 사무실을 청소하던 직원이 갑 몰래 을에게만 갑이 살해한 K의 소재를 알려주었다면, 을은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려줄 수 있다.
- ㄷ. 갑의 소송 진행 중, 갑과 을이 친구들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자신이 K를 납치했다고 갑이 공개적으로 실토했어 을이 K의 소재를 알게 되었다면, 을은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 ㄹ. 갑으로부터 K를 잔혹하게 살해하였다는 것을 듣게 된 을이 변호사의 양심상 더 이상 갑의 변호사가 될 수 없어 사임하였다더라도, 을은 K의 소재를 경찰에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2. Y의 소유권자에 대하여 A와 B의 판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사건 개요>

갑은 을 소유의 소 X를 훔쳐 병에게 팔았다. 갑은 이러한 사실을 병에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은 매수할 당시 X가 도둑맞은 소임을 알지 못했다. X는 병의 농장에서 송아지 Y를 출산하였다. 그 후 을은 병의 농장에서 X를 찾게 되었고, 병에게 X와 Y를 모두 자기에게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법률>

원래의 소유권자는 도둑맞은 물건(도품)을 매수한 사람에게 자신의 소유물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자가 그 물건을 매수하였을 당시에 도품인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2년 동안 보유하고 있을 때에는 도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된다.

<논쟁>

A: Y는 X의 일부로 보아 판단해야 해. <법률>에 따라 아직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병이 X를 소유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그 경우에 Y도 을의 것이어야 해. 이 경우 X가 Y를 을의 농장에서 수태하였든 병의 농장에서 수태하였든 그것은 고려할 필요가 없어. 또한 <법률>이 정한 기간이 지나 병이 X의 소유권을 갖게 되면 병은 Y도 소유하게 돼.

B: 항상 Y를 X의 일부로 판단할 수는 없어. 물론 병이 X를 소유할 수 있을 정도로 <법률>이 정한 기간이 지났다면 Y도 병의 소유가 된다는 점은 당연해. 하지만 그러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병이 X를 매수한 다음에 Y가 수태되었고, Y가 태어날 때까지 X가 도품인 줄 병이 몰랐다면, 병은 Y를 가질 자격이 있어. 이 경우만은 X와 Y의 소유를 별개로 생각해야 해.

- ① X가 Y를 수태한 것이 도난되기 전이었고, Y의 출산 이후 X가 도품임을 병이 알았는데 그 시점이 매수 이후 2년이 지나기 전인 경우
- ② X가 Y를 수태한 것이 도난되기 전이었고, Y의 출산 이후 X가 도품임을 병이 알았는데 그 시점이 매수 이후 2년이 지난 뒤인 경우
- ③ X가 Y를 수태한 것이 매수 이후이었고, Y의 출산 이후 X가 도품임을 병이 알았는데 그 시점이 매수 이후 2년이 지나기 전인 경우
- ④ X가 Y를 수태한 것이 매수 이후이었고, Y의 출산 이후 X가 도품임을 병이 알았는데 그 시점이 매수 이후 2년이 지난 뒤인 경우
- ⑤ X가 Y를 수태한 것이 매수 이후이었고, Y의 출산 이전에 X가 도품임을 병이 알았는데 그 시점이 매수 이후 2년이 지나기 전인 경우

3. 옛날 어떤 나라에 살던 노비 ‘홍’은 동료 셋과 함께 양민인 주인의 숙부를 구타하여 손가락 세 개를 부러뜨리고 도망하였다가 동료 한 명을 붙잡아 자수하였다. 당시의 <형벌 규정>과 이를 적용한 <처벌 사례>를 근거로 판단할 때, ‘홍’이 받았을 처벌은?

<형벌 규정>

- 장형에는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의 다섯 등급이 있다. 그 위로는 도형에 처해지는데, 도형에는 1년, 1년 반, 2년, 2년 반, 3년의 다섯 등급이 있다.
- 양민이 양민을 물건으로 구타하면 장형 60대에 처한다. ... 물건으로 상해하면 장형 80대에 처한다. ... 치아를 부러뜨리거나 손가락을 부러뜨리면 도형 1년에 처한다. 치아를 2개 이상, 손가락을 2개 이상 손상시키면 도형 1년 반에 처한다. 칼날로 상해하거나 늑골을 부러뜨리면 도형 2년에 처한다. 팔이나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한쪽 눈을 실명케 하면 도형 3년에 처한다.
- 여럿이 함께 사람을 구타하여 상해하였다면 1등급씩 감한다. 범인이 자수를 하면 2등급을 감하고, 같이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붙잡아 자수할 경우 다시 1등급을 감하고, 반수 이상을 붙잡아 자수할 경우 다시 1등급을 감한다.
- 가해자와 피해자 신분이 양민, 상급천민인 부곡, 하급천민인 노비로 서로 다른 경우, 신분의 고하에 따라 1등급을 차등적으로 가감하고, 가해자나 피해자에 주인의 친족이 포함된 경우 다시 1등급을 차등적으로 가감한다.

<처벌 사례>

- 양민 갑의 노비 을은 양민 병과 싸우다 병의 치아를 하나 부러뜨려 도형 2년에 처해졌고, 병의 부곡 정은 갑과 싸우다 갑의 치아를 2개 부러뜨려 도형 2년에 처해졌다.
- 갑의 노비 을은 갑의 숙부 무와 싸우다가 무를 벽돌로 쳐서 상해를 입혀 도형 1년에 처해졌고, 무는 을의 늑골을 부러뜨려 장형 100대에 처해졌다.

- ① 장형 100대 ② 도형 1년 ③ 도형 1년 반
- ④ 도형 2년 ⑤ 도형 2년 반

4. 다음에 나타난 축하곡, 강의 내용, 강연 내용의 보호에 관한 A국과 B국의 저작권법의 차이점을 지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판단은 연주와 강의와 강연을 완료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작곡가 겸 가수 갑은 을의 콘서트에 초대 가수로 초청되었다. 콘서트에서 을은 갑에게 콘서트를 축하하는 곡을 즉석에서 작곡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갑은 머릿속에 떠오른 리듬을 기타로 연주하였다. 을의 콘서트에서는 녹음이나 녹화가 금지되었다. 갑이 연주한 축하곡은 A 국에서는 보호되지만 B 국에서는 보호되지 않는다.
- 교수 갑은 자신이 작성한 강의노트를 수업 시간에 침묵 없이 읽어 내려가는 방법으로 강의하였다. 갑은 강의노트 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꺼려 수업 중 녹음이나 녹화를 금지하였다. 갑의 강의 내용은 A 국과 B 국 모두에서 보호된다.
- 사회적 쟁점에 대한 시민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주제의 민감성 때문에 녹음이나 녹화는 금지되었다. 저명한 학자 갑은 초청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연구하고 싶은 주제여서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갑이 온 것을 안 사회자는 강연을 부탁하였고 갑은 생각난 것을 즉석에서 강연하였다. 갑의 강연 내용은 A 국에서는 보호되지만 B 국에서는 보호되지 않는다.

- ① A 국에서는 노동력이 투입되면 보호되지만 B 국에서는 전문성이 있어야 보호된다.
- ② A 국에서는 등록, 허가가 없어도 보호되지만 B 국에서는 등록, 허가가 있어야 보호된다.
- ③ A 국에서는 예술성이나 학술성이 없어도 보호되지만 B 국에서는 예술성이나 학술성이 있어야 보호된다.
- ④ A 국에서는 남의 것을 베끼지 않는 정도의 창작성이 있으면 보호되지만 B 국에서는 독창성이 있어야 보호된다.
- ⑤ A 국에서는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면 보호되지만 B 국에서는 사상이나 감정이 유형의 표현매체에 고정되어야 보호된다.

5. 다음은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 AAP)에 의한 간 손상 기전과 용법이다. 제시된 용법에 근거하여 AAP를 안전하게 처방한 사례는?

<AAP에 의한 간 손상>

- AAP가 체내에 들어오면 주로 글루쿠론산 전이효소와 술포전이효소에 의해 각각 글루쿠로니드(glucuronide) AAP와 황산염(sulfate) AAP로 대사되어 안전하게 체외로 배출된다.
- 그러나 대용량의 AAP가 간에서 대사될 때는 대사에 CYP효소가 관여하게 되면서, 독성 대사물질인 NAPQI(N-acetyl-p-benzoquinoneimine)가 형성된다.
- NAPQI는 세포 내 중요 단백질들과 반응함으로써 세포대사를 교란하고 점차 간세포를 사멸에 이르게 한다.
- 이 때, NAPQI가 글루타치온(glutathione)과 결합하면 안전하게 체외로 배출되는데, 아세틸시스테인(N-acetylcysteine)을 투약하면 글루타치온 생산량이 증가한다.

<AAP 용법>

- AAP는 하루 4g 미만의 사용량에서는 간독성을 일으키는 예가 드물지만, 성인에서 간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최소용량이 7~8g 정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이상부터는 주의가 필요하다.
- 21g 이상의 용량에서는 대부분 심각한 간부전으로 이행되기 때문에 1회 21g 이상을 투약해서는 안 된다.
- AAP로 인한 간 손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8시간 이내의 아세틸시스테인을 투약해야한다.
- 이미 진행된 만성 간질환이나 금식 및 영양결핍, 알코올 섭취 등의 특수한 조건에서는 알려진 최소용량보다 더 적은 용량으로도 간세포 괴사가 일어나므로 기본 용법과 다른 투여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알코올과 영양결핍의 사례에서 더 적은 양으로도 간 손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알코올은 CYP효소의 활성을 유도하여 독성 대사 물질 NAPQI을 발생시킨다.
 - 영양결핍의 경우는 글루타치온의 생성을 저하시켜 NAPQI의 독성을 중화시키는 것을 방해한다.

- ① 만성화된 알코올성 간질환을 앓고 있는 ‘갑’에게 AAP를 1회 7g 미만으로 제한하여 처방하였다.
- ② 알코올 섭취나 영양결핍 등 AAP 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는 ‘을’에게 용량 제한 없이 AAP를 처방하였다.
- ③ 영양결핍 증세를 보인 ‘병’에게 글루쿠론산 전이효소와 술포전이효소가 정상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1회 8g의 AAP를 처방하였다.
- ④ 선천적으로 글루쿠론산 전이효소가 없는 ‘정’에게 원활한 대사를 위하여, 1회 4g 미만의 AAP 처방 시에도 CYP효소 활성화를 위한 처치를 병행하였다.
- ⑤ 금식 사실을 밝히지 않은 ‘무’에게 AAP를 1회 4g 처방하였지만, 글루타치온의 정상적 생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그 직후 아세틸시스테인을 처방하였다.

1. 다음 <사례>와 <보기>를 읽고 이어지는 물음에 순서대로 답하시오.

1-1. <사례>의 쟁점을 밝히고, 이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논의해야 하는 세부 쟁점들을 그 논의의 필요성과 함께 열거하시오.

1-2. <보기>의 [1안], [2안], [3안] 중 하나를 해결 방안으로 채택하고, 채택한 방안이 적절한 이유를 위 세부 쟁점별로 논거를 제시하며 전개하시오.

1-3. 본인의 주장에 대해 가능한 반대 의견이나 입장을 설명하고 반박하시오.

1-4. 최종 결론을 간단히 서술하시오.

— <사 례> —

A국 공공기관은 채용 시험을 통해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며, 대체로 매년 응시자의 3%만이 합격한다. 채용 시험의 합격은 직업적·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므로, 능력과 노력에 따른 합당한 보상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최근 10년간 응시자들의 사회적 배경, 즉 부모의 직업·수입·학력과 당사자의 출신 지역 등을 계량화하여 분석·비교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에 따르면 대다수 합격자의 ‘사회적 배경 지수’가 불합격자의 평균적인 사회적 배경 지수를 훨씬 상회하였고, 또 이러한 격차는 계속 확대되어 왔다. 그 때문에 이런 채용 방식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들끓게 되자, A국 정부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공공기관 채용 제도 개선안’을 모색하는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서는 <보기>의 안들이 제시되었다.

— <보 기> —

[1안] 모집 인원 전체를 채용 시험 성적순으로 채용하되, 사회적 하위 계층의 지원자에게 사회적 격차를 보정할 수 있는 수준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2안] 모집 인원의 80%는 채용 시험 성적순으로 채용하고, 나머지 20%는 채용 시험 성적, 최종 학력, 학교 성적, 봉사 실적, 자기소개서 등을 종합 고려한 심사를 통하여 채용한다.

[3안] 모집 인원의 80%는 채용 시험 성적순으로 채용하고, 나머지 20%는 사회적 하위 계층 지원자 중 최소한의 직무 수행 기본능력을 고려하고 봉사활동 경력 등에 나타나는 공공적 지향과 태도를 평가하여 선발한다.

2. 다음 <사례>와 <보기>를 읽고 이어지는 물음에 순서대로 답하시오.

- 2-1. <사례>에서 도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쟁점 한 가지를 <보기>를 참조하여 밝히고, 그것이 왜 가장 중요한지 설명하시오.
- 2-2. 선택한 쟁점을 해결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그 원칙에 입각하여 쟁점에 대한 본인의 주장을 논증하시오. (여러 개의 원칙을 제시해도 무방함)
- 2-3. 본인의 주장에 대해 가능한 반대 의견이나 주장을 설명하고 반박하시오.

— <사 례> —

매너가 중시되는 야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여러 불문율이 존재한다. 만약 상대가 매너에 벗어나는 행위를 할 경우 투수가 빈볼(고의로 상대 타자 몸을 겨냥해서 던지는 공)을 던져서 응징하는 것 또한 흔히 인정되는 불문율이다. 투수의 빠른 공을 맞은 타자는 크게 다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2016년 9월 1일 열린 甲 팀과 乙 팀의 경기에서 빈볼이 등장했다. 빈볼 상황은 다음과 같다. 그 전날 경기에서 甲 팀의 선수 A는 5회까지 팀이 9:2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乙 팀을 상대로 도루를 했고, 이날은 8:0으로 앞선 1회부터 도루를 했다. (야구에서는 큰 점수 차이로 이기고 있을 때는 도루를 하지 않는 것이 매너다.) 이날 경기에서 A는 3회와 6회 두 차례에 걸쳐 공에 맞았는데, 특히 6회 맞은 공은 누가 봐도 명백한 빈볼이었다. 乙 팀의 투수 B가 처음 두 개의 공을 몸 쪽에 바짝 붙인 위협구로 던진 데 이어, 세 번째 공으로 기어이 A를 맞추었기 때문이다. 화가 난 A는 B에게 곧장 달려 나갔고, 甲 팀과 乙 팀의 선수 전원이 경기장에서 몸싸움(벤치클리어링)을 벌이게 되었다. 심판은 B를 퇴장시켰고, 乙 팀의 감독 Y는 甲 팀의 보복성 빈볼을 우려하여 자기 팀 주축 선수들을 교체했다.

빈볼을 누가 지시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강력한 카리스마로 선수단을 장악하고 있는 Y가 정황상 유력해 보이나, 본인은 극구 부인하고 있다. 빈볼을 지시한 사람을 밝히지 않는 것 또한 야구계의 오랜 관습이기 때문에 누군지 드러날 가능성은 극히 낮다. 다만 B가 단독으로 벌인 일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으며, 어쨌거나 빈볼을 던진 건 B임에도 불구하고 B를 비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일부는 오히려 매너 없는 행위로 상대를 자극한 A의 잘못이 더 크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야구 리그를 총괄하는 백구야구위원회에서는 B에게 위원회 벌칙내규에 의거하여 제재금 300만원과 출장정지 7경기의 제재를 부과했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선수단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Y에게 벌칙내규를 적용하여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하고 乙 구단에게도 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제재금 700만원을 부과했다.

甲 팀 감독 X: 첫 경기에선 5회 9:2로 앞선 상황에서 도루를 했고, 두 번째 경기에선 1회 8:0에서 도루를 했다. 이게 예의를 저버린 야구인가? 첫 경기는 결국 연장전까지 갔고, 두 번째 경기는 겨우 1회였다. 그리고 선수가 다치면 누가 책임지나? 아무리 야구에서 관습이나 불문율이 중요하다 해도 선수의 몸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빈볼은 또다시 보복성 빈볼을 부를 뿐이다. 내 선수가 위험한 일을 당했는데 그 어떤 감독이 가만히 있으려 하겠는가? 상대 팀에 피해를 주면 자신의 팀에도 피해가 간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한다.

乙 팀 감독 Y: 야구는 전쟁이 아니다. 매너를 갖춘 스포츠다. 상대에 대한 배려 없이 팀의 승리나 개인 기록만을 위해 경기하다 보면, 필요 이상으로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결국 양 팀 다 손해를 본다. 팬들에게도 예의가 아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느 감독이 빈볼을 던지라고 하겠는가? 아마 B도 실수로 그랬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결론에 형평성이 있는지 묻고 싶다. 지금까지는 이런 결론을 내린 적이 없지 않았나? 앞으로 빈볼 논란이 생기면 아무런 증거도 없이 모두 감독의 지시로 판단하여 책임을 묻겠다는 뜻인가?